

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 예산제
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용진 의원 대표발의)



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

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용진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66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4년 3월 4일

발의자 : 경수현, 고영옥, 김경이, 소형준,
이용진, 이인순, 정윤주

1. 제안이유

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위하여 2018년 3월 개정된 「지방재정법」에 근거하여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를 예산편성뿐만 아니라 집행과 결산을 포함한 ‘예산과정’으로 확대하고자 함.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정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주민참여예산 범위를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확대함(안 제1조, 안 제3조 ~ 제5조, 안 제7조 ~ 제9조, 안 제12조, 안 제14조)

나. ‘예산과정’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(안 제2조)

다. 법제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정비함(안 제1조, 안 제15조 ~ 제16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재정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, 「지방자치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조치

다. 사전협의 : 자치행정과

라. 입법예고 : 2024. 3. 7. ~ 2024. 3. 12.

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

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
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재정법」 제39조”를 “「지방재정법」 제39조”로, “예산
편성과정”을 “예산편성 등 예산과정”으로 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주민”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.

가. 서울특별시 성북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

나. 구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

다.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·

직원

2. “예산과정”이란 예산의 편성·집행·결산과 관련된 전 과정을 말한

다. 다만, 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에 따른 성북구의회(이하 “의회”라
한다)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.

제3조 중 “예산편성 시”를 “예산과정과 관련된”으로 한다.

제4조 중 “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”를 “예산과정에”로 한다.

제5조 중 “예산편성”을 “예산과정”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예산편성”을 “예산과정”으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지방예산편성관련”을 “예산과정 관련”으로, “사람”을 “주민”으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예산편성”을 “예산과정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1호 및 제3호 중 “예산편성”을 각각 “예산과정”으로 한다.

제14조제1항 중 “예산편성”을 “예산과정”으로 한다.

제15조제3항 중 “개의하고”를 “개의(開議)하고”로 한다.

제16조 중 “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”을 “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22조의2제3항 중 “전에”를 “전 또는 필요시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재정법」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예산편성과정 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구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“주민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서울특별시 성북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. 구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3.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·직원 	<p>제1조(목적) ----- 「지방재정법」 제39조 ----- -----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----- -----.</p> <p>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“주민”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.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서울특별시 성북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나. 구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다.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·직원 2. “예산과정”이란 예산의 편성·집행·결산과 관련된 전 과정을 말한다. 다만, 「지방자

다.

② (생략)

제8조(의견 제출) ① 지방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6조의 구청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제9조(위원회 구성)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 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~ ⑥ (생략)

제1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
2. (생략)
3.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
4. (생략)

제14조(분과위원회 설치) ① 위원회는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

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8조(의견 제출) ① 예산과정 관련
주민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9조(위원회 구성) ① -----
예산과정-----

-----.

② ~ ⑥ (현행과 같음)

제12조(기능) -----
-----.

1. 예산과정-----
--
2. (현행과 같음)
3. 예산과정-----

4. (현행과 같음)

제14조(분과위원회 설치) ① -----
--- 예산과정-----

의견 수렴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~ ④ (생략)

제15조(회의소집 및 의결) ①·② (생략)

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6조(회의결과 공개)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며,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 제1항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회의일시, 회의안건 및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.

제22조의2(지역회의 운영) ①·② (생략)

③ 지역회의는 예산편성 전에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④·⑤ (생략)

-----.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제15조(회의소집 및 의결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 개의(開議)하고 -----

-----.

제16조(회의결과 공개) -----
-----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 제1항-----

-----.

제22조의2(지역회의 운영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 전 또는 필요시 -----

-----.

④·⑤ (현행과 같음)